

# 제천시농공단지조성사업자금관리특별회계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422
----------	-----

제출년월일 : '99. . . .

제 출 자 : 제 천 시 장

## 1. 제 안 이 유

농공단지조성사업 및 농공단지관리사업에 필요한 자금관리에 관한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천시농공단지조성사업자금관리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의 명칭 및 관련조문을 개정코자 함.

## 2. 주 요 골 자

### 1. 조례명을

농공단지관리및조성자금관리특별회계설치운영조례로 명칭 변경  
⇒ 조성자금 뿐만아니라 농공단지 관리를 위한 기금임을 명시

2. 제5조 (세출)에 "농공단지 관리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추가

## 3. 관 계 법 령

농공단지 개발시책 통합지침

- 붙 임 : 1. 제천시농공단지조성사업자금관리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2. 신규조문대비표  
3. 관계법규

# 제천시농공단지조성사업자금관리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제천시농공단지조성사업자금관리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조례제명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천시농공단지관리및조성자금관리특별회계설치운영조례

제1조(목적)중 “농공단지조성사업을 촉진하고”를 “농공단지조성사업의촉진 및 농공단지관리사업을 위한”으로 하며, “제천시농공단지조성사업자금관리특별회계”를 “제천시농공단지관리및조성자금관리특별회계”로 한다.

제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농공단지조성사업이라 함은 농공단지의 편입용지의 매입, 기반조성, 진입도로개설, 전기, 통신, 용수개발 등의 사업을 말하며, 농공단지관리사업이라 함은 단지내 공동이용시설물, 도로 및 기타 시설물의 설치·유지·관리 등의 사업을 말한다.

제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5조(세출) 특별회계의 세출은 토지매입비, 보상비, 지구시공비, 부대시설비, 기재상환금, 기타 농공단지조성사업에 필요한 경비와 농공단지관리사업 및 특별회계운영에 필요한 경비로 한다.

제12조(자금의 전용 금지)중 “농공단지조성사업비”를 “농공단지특별회계사업비”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신·구조문 대비표

현행	개정안
<p><u>제천시농공단지조성사업자금관리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u></p> <p>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제천시 농공단지조성사업을 촉진하고 예산의 합리적인 운영을 기하기 위하여 농공단지개발시책통합지침 제11조 6항의 규정에 의한 제천시농공단지조성사업자금관리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농공단지조성사업이라 함은 농공단지의 편입용지의 매입, 기반조성, 진입도로개설, 전기, 통신, 용수개발 등의 사업을 말한다.</p> <p>제3조 ~ 제4조 (생략)</p> <p>제5조(세출) 특별회계의 세출은 토지매입비, 보상비, 지구시공비, 부대시설비, 기채상환금, 기타 농공지구조성사업에 필요한 경비로 한다.</p> <p>제6조 ~ 제11조(생략)</p> <p>제12조(자금의 전용금지) 농공단지조성사업비는 타 회계로 전용할 수 없다.</p>	<p><u>제천시농공단지관리및조성자금관리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u></p> <p>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제천시 농공단지조성사업의 촉진 및 농공단지관리사업을 위한 예산의 합리적인 운영을 기하기 위하여 농공단지개발시책통합지침 제11조 6항의 규정에 의한 제천시농공단지관리및조성자금관리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농공단지조성사업이라 함은 농공단지의 편입용지의 매입, 기반조성, 진입도로개설, 전기, 통신, 용수개발 등의 사업을 말하며, 농공단지관리사업이라 함은 단지내 공동이용시설물, 도로 및 기타 시설물의 설치·유지·관리 등의 사업을 말한다.</p> <p>제3조 ~ 제4조 (현행과 같음)</p> <p>제5조(세출) 특별회계의 세출은 토지매입비, 보상비, 지구시공비, 부대시설비, 기채상환금, 기타 농공단지조성사업에 필요한 경비와 농공단지관리사업 및 특별회계운영에 필요한 경비로 한다.</p> <p>제6조 ~ 제11조(현행과 같음)</p> <p>제12조(자금의 전용금지) 농공단지특별회계사업비는 타 회계로 전용할 수 없다.</p>

# 농공단지개발시책통합지침

1997. 12. 31

산    업    자    원    부  
농    설    립    통    부  
환    설    경    통    부  
건    설    교    통    부

### 제 3장 농공단지의 개발사업지원

제 11 조(단지조성비의 지원) ①농림부장관(광공단지의 경우에는 산업자원부장관. 이하 같다),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공영개발하는 농공단지의 조성비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농림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국비보조 및 지방비의 보조기준과 조건은 별표 2와 같다.

③광공단지의 지원기준은 별표 3과 같다.

④농어촌지역의 부존자원(농수산물, 석재등 당해 시장·군수·구청장이 인정하는 부존자원)을 원자재로 사용하는 업체가 3분의2이상 입주하는 농공단지인 경우의 지원기준은 별표 4와 같다.

#### 【 별표 2 】 부지조성비 지원 (제11조 관련)

##### (1) 의무공종 내용(국비보조 교부조건)

용 도 별		세 부 공 종 내 용	
부 지	용 지 취 득 비	토지보상비, 지상물 보상비(공동이용시설용지 포함)	
	단 지 시 공 비	- 정지토공, 사면보호, 집수탱크, 외곽울타리, 단지내 도로 · 수도관로, 단지내 하수시설, 공동이용시설(위락시설등) · 단지내 구조물, 조경, 시공중 발생이자등	
조 성	부 대 시 설	진 입 도로	단지진입도로 편입토지의 용지매수비, 도로포장 및 구조물등
		공동이용건축물	종사원 1,000명당 100명이내
		전력, 통신, 용수, 기타 시설	단지까지 전력인입, 통신관로, 단지의 용·배수시설, 가로등 용수 개발(또는 상수도 인입), 용배수시설 이설등
		기 타	측량설계비, 공사감독비, 관리비, 잡지출

##### (2) 농어촌지역별 단지조성비 지원

구 분	일 반 농 어 촌	추가지원농어촌	우선지원농어촌
국비보조 (천원/평)	15 (-)	30 (15)	45 (15)
국비용자 (천원/평)	10 (-)	20 (10)	20 (10)
지방비보조(천원/평)	5 (-)	5 ( 5)	5 ( 5)
합 계	30 (-)	55 (30)	70 (30)

- 1) 국비보조금 교부조건에 의해 기존의 부지조성 공종을 포함
- 2) 지원대상면적은 부대시설면적을 포함한 면적으로 함
- 3) 잔여소요는 지방비용자(기채)로 충당함
- 4) ( )내는 대기업에 대한 지원기준임
- 5) 국비용자조건
  - (삭제)
  -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 년리 5.0%, 5년거치 10년균분상환(단, '98.1.1부터 시행)

**【 별표 3 】 광공단지 조성비 지원기준(제11조 관련)**

구 분	국 비 보 조	국 비 용 자	지 방 비 보 조
평 당 정 액	50천원	30천원	5천원

- 1) 국비보조예산은 통상산업부 소관에서 지원하되 조성비 등을 감안 추가지원 가능
- 2) 국비용자예산은 농림부 소관에서 지원
- 3) 별도의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기존의 농공단지와 같음

**【 별표 4 】 농어촌의 부존자원을 활용하는 농공단지의 조성비 지원기준**

구 분	국 비 보 조	국 비 용 자	지 방 비 보 조
평 당 정 액	50천원	30천원	5천원

- 1) 잔여사업비는 지방비용자(기채)로 충당함
- 2) 별도의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기존의 농공단지와 같음

⑤ 농공단지 조성비중 국비보조금(이하 "보조금"이라 한다)의 예산지원 요령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시장·군수·구청장은 농공단지의 조성사업비 소요예산을 매 분기별로 시·도지사에게 요구하고, 시·도지사는 매분기 20일 전까지 별지 1의 서식에 의하여 농림부장관에게 요구하여야 한다.
2. 시장·군수·구청장은 지방비 용자금에 대한 기채를 조속히 이행하여 사업추진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기확보 내시된 국비소요 예산에 대하여는 기채할 수 없다.
3. 시·도지사는 농공단지 조성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기 배정된 예산을 단지별로 재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재조정된 결과를 농림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4.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보조금 지원에 따른 지방비 부담액을 확보하여 사업추진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5.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예산배정과 동시에 농공단지 지정이 가능하도록 3월말까지 환경영향평가, 관계기관협의, 기초조사등 사전준비를 완료하여야 한다.

⑥보조금의 운영 등에 관한 기준은 다음과 같다.

1.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농공단지 조성자금의 관리를 위하여 특별 회계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2. 농공단지의 조성사업에 관한 보조금의 교부 및 관리에 관한 업무는 보조금의 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 제38조 및 동법시행령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도지사에게 위임한다.
3. 시도지사는 매분기 20일 전까지 별지 1의 서식에 의하여 소요자금 배정요청을 농림부장관에게 하여야 한다.
4. 시도지사는 농림부장관으로부터 배정받은 보조금을 사업추진 실적에 따라 단지별로 균형있게 배정하되 용지보상비 등은 공사비에 우선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보조금의 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 제38조 (사무의 위임)**

보조금의 교부 및 관리 등에 관한 중앙관서의 장의 사무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일부를 소속관서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보조금의 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 시행령 제17조 (사무의 위임)**

중앙관서의 장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사무중 당해 중앙관서의 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무를 소속관서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한다.

1. 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보조금교부신청의 접수
2. 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보조금의 교부결정
3. 법 제21조제1항과 법 제30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교부결정의 취소
4. 법 제2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조사업실적보고서의 접수
5. 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보조사업의 실적심사 및 보조금의 금액의 확정
6. 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보조금의 반환에 관한 처분
7. 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보고의 접수 및 검사 또는 질문

제 12 조(공동이용건축물의 설치지원) 공동이용건축물에 대한 농림부장관의 보조 조건은 다음과 같다.

1. 대상 농공단지 : 공영개발하는 농공단지

# 충 청 북 도

우360-765 / 청주시 문화동 89 / 전화 220-3232 / 행 3232 / FAX 220-3229/  
 기업지원과장 김 경 용 / 산업입지담당 임 성 규 / 담당자 장 우 성

문서번호 기업 55145 - 076

시행일자 1998. 12. 3.

(경 유)

수 신 더 02 ~ 12

참 조 경제과장

선결	과장	김경용	지		
접	일자	1998. 12. 04	시	결	담당
	시간				
수	번호	618	재	공	람
	처리과	농업경제과			
	담당자				담당자

## 제 목 농공단지 특별회계 관련조례 정비 및 운영 철저

1. 충청도 공업55470 - 117('98. 2. 9)호와 관련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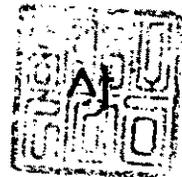
2. 위호로 충청북도농공지구조성및관리조례 폐지에 따른 시·군 농공단지 조성자금특별회계 관련조례를 개정토록하였으나 일부 시·군에서는 현재까지 개정하지않아 다시 시달하니 조속한 시일내 관련 조례를 개정하시기 바라며, 또한, 금번 개정시 농공단지조성자금특별회계 관련조례를 신중히 검토하여 현실에 맞지않는 규정은 시·군 실정에 맞게 정비하시기 바랍니다.

4. 아울러, 시군에서 운영중인 농공단지 특별회계를 타회계로 전용하거나 특별회계에서 발생된 이자를 일반회계에 세입조치하여 감사에 지적되는 사례가 있는바 시·군에서는 농공단지특별회계 운영에 철저를 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농공단지조성자금특별회계관련조례 개정시 착안사항 1 부.

2. 충청북도농공지구조성및관리조례폐지조례 사본 1 부. 끝.

충 청 북 도 지



# 농공단지조성자금특별회계관련조례 개정시 착안사항

## 1. 조례명

농공단지관리및조성자금관리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

→ 조성자금 뿐만아니라 농공단지 관리를 위한 자금임을 명시

## 2. 제5조 (세출)

세출 항목에 “농공단지 관리에 필요한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추가

→ 농공단지 관리를 위한 사업비 지출 근거를 명시

※ 농공단지와 관련없는 세출항목 삽입은 불가함

## 3. 제12조 (관리비) : 삭제

⇒ 관리비 관련규정 삭제 (농공단지개발시책통합지침 제21조 삭제)

## 4. 제13조 (자금의 전용금지)

⇒ 농공단지 조성사업비는 타회계로 전용 할수없다.(단서규정 삽입금지)

(사유: 농공단지특별회계 설치목적에 위배된 지출 불가)

## 5. 공통 : 농공지구 ⇒ 농공단지로 변경(용어정리)

※ 동 조례 설치 목적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시군 실정에 맞게 개정

충청북도의회의 의결을 얻은 충청북도정신질환자요양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 충청북도조례 제2362호

1998년 1월 16일  
충청북도지사 주 병 덕

충청북도정신질환자요양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

충청북도정신질환자요양소설치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충청북도정신질환자요양소설치조례"를 "충청북도정신요양병원설치조례"로 한다.

제1조중 "충청북도정신질환자요양소(이하 "요양소"라 한다)"를 "충청북도정신요양병원(이하 "요양병원"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2조 내지 제3조 및 제5조제1항중 "요양소"를 "요양병원"으로 한다.

제2조중 "운천동 636-5번지"를 "사직동 554-6번지"로 한다.

제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조 (사용료 및 진료비) 사용료와 진료비는 보건복지부에서 고시하는 수가에 준하여 징구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충청북도의회의 의결을 얻은 충청북도농공지구조성및관리조례폐지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 충청북도조례 제2363호

1998년 1월 16일  
충청북도지사 주 병 덕

충청북도농공지구조성및관리조례폐지조례

충청북도농공지구조성및관리조례(조례 제1431호, 1985. 7. 5)는 이를 폐지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충청북도의회의 의결을 얻은 충청북도제종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 충청북도조례 제2364호

1998년 1월 16일  
충청북도지사 주 병 덕